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FSA, 연금·보장성보험 판매 투명성 제고 추진

□ **영국의 금융감독청(FSA)은 연금 및 보장성보험 판매 독립설계사의 전문성·윤리성 함양과 이들의 투명한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최종방안 결정에 앞서 9차 보고서를 12월15일 발표함.**

o FSA는 연금·보험판매시장에서 발견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6년 6월 소비자판매채널관리위원회(RDS: the Retail Distribution Review)를 설립하였고, RDR은 상품판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년여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

o 9차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2010년 3월16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며, 2010년 3분기에는 최종안이 발표되고, 2012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임.

□ **FSA는 6월의 8차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설계사의 전문성 제고, 퇴직연금자문비용 부과, 수수료 공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발표**

o FSA는 설계사전문성평가위원회(Professional Standards Board)를 산하에 설치하여 설계사에 대한 자격 승인과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설계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로 함.

- 기존 설계사는 2012년까지 4단계 자격평가시스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신설되는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보조교육(세미나·강의참석, 온라인교육) 이수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봄.

o FSA는 3가지 원인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퇴직연금판매에 근거한 독립재무설계사의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설계사의 기여도에 따른 수당 지급을 제안

- 정보전달 왜곡원인: ① 수수료지급이 있는 상품을 추천, ②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, ③ 설계사 수당은 판매실적에 근거하여 지급

o 보장성보험(사망보험, CI보험, 소득보장보험)을 판매하는 독립설계사는 판매에 앞서 제공하는 상품종류를 인지시키며, 자문비용은 소비자로부터 지급됨을 알릴 것을 제안

- FSA는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판매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차보고서에서는 보장성보험판매가 퇴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는 옵션 사항을 추가 (FSA, 12/15)